

상벌위원회 규정

(주)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양건열

1 상벌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한 상벌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2.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1.1 위원장: 대표이사, 사장

2.1.2 위 원: 본사에 상근하는 이사

2.1.3 간 사: 인사총무팀장

2.1.4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제 3 조【기밀유지】

위원회는 엄정중립과 공명 정대하게 회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직원의 표창 및 징계의 결정으로 한다.

제 5 조【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6 조【성원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7 조【증언 및 방증】

위원회는 부의사항에 관한 증언을 듣거나 방증을 수집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제 3자를 출석케 할 수 있다.

제 8 조【의결의 효력】

8.1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이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8.2 의결사항에 대한 위원장의 요청시에는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조【의사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 회의의 의사를 기록하여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의사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10 조【재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사후에 사무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와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 11 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경영지원실에서 관장한다.

제 12 조【우수사원포상】

- 목적 : 회사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를 치하하고 보다 발전적인 회사 문화 구축
- 내역 : 연 1회 (필요시 다르게 시행) 우수사원 추천, 상신, 선정하여 포상

포상대상	포상내용
1) 추천대상 임직원 2) 추천부문 - 회사활동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본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규를 준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회사활동에 있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대내/대외 상을 수여한자) - 회사 업무에 있어 탁월한 창의력과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한 자 - 기타 상당한 업적 또는 공로가 있는자	XXX인 대상: - 상패(장) - 포상금(150만원) 또는 포상금에 상당하는 기타 물품(여행권/상품권등) - 인사평가 시 가점 부여 - 3일간의 특별 유급 휴가 XXX인 우수상: - 상패(장) - 포상금(100만원)또는 포상금에 상당하는 기타 물품(여행권/상품권등) - 인사평가 시 가점 부여 - 2일간의 특별 유급 휴가 XXX인 장려상: - 상패(장) - 포상금(30만원)또는 포상금에 상당하는 기타 물품(상품권등)

- 주관부서 : 인사총무팀

12.1 본부(실)장 이상 추천 : 각 본부(실)별로 인원 추천(본부장 포함 부서원 10인 이하는 1명, 20명 이하는 2명, 10명 단위로 1명씩 추가 추천), 본부(실)장이 추천명단과 추천 사유를 인사총무팀장에게 송부하면 이를 취합하여 상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2.2 상별위원회에서는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최종 선정한다.

제 13 조【우수 아이디어 포상】

- 목적 : 회사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를 치하하고 보다 발전적인 회사 문화 구축
- 내역 : 연 1회 (필요시 다르게 시행) Idea box 제안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포상

포상대상	포상내용
1) 추천대상 전 직원(심사위원 및 임원급제외) 2) 추천기준 - 매출증대와 신시장개척에 Idea를 제공한 자 - 경영합리화 추구로 혁신적인 업무개선과 원가 절감, 업무 능률 증대에 Idea를 제공한 자 - 제품(신상품) 개발 및 연구기획에 Idea를 제공한 자 - 회사이익 증대를 위한 Idea를 제공한자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Idea 포상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	대상: - 상패(장) - 포상금(100만원)또는 포상금에 상당하는 기타 물품(여행권/상품권등) - 인사평가 시 가점 부여 우수상: - 상패(장) - 포상금(30만원)또는 포상금에 상당하는 기타 물품(상품권등) 장려상: - 포상금(20만원)또는 또는 포상금에 상당하는 기타 물품(상품권등)

- 주관부서 : 인사총무팀

13.1 인사총무팀장은 Idea Box(매일 접수 포함)를 통한 제안된 전체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아이디어 제안자 , 제안내용, 효과등을 기록한 내용을 상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별위원회에서는 대상,우수상,장려상 선정한다.

제 14 조【기타 사원포상】

회사 임직원이 회사발전을 위한 혁혁한 공로를 세우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공로로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 때에는 수시로 상별위원회를 열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 15 조【벌, 징계】

15.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별위원회를 열어 해고처분을 할 수 있다.

- 15.1.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부문 또는 회사 전체의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
- 15.1.2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자

15.1.3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5.1.4 입사후 아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 되었을 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된 자

.병역의무자로서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5.1.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15.2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5.2.1 직무를 태만히 한 자

15.2.2 직원간의 인화를 저해한 자

15.2.3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 지각, 조퇴가 현저한 자

15.2.4 보건 또는 안전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자

15.2.5 이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15.2.6 부당하게 월권행위를 한 자

15.2.7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재산을 파괴,망실케 하여 손해를 입힌자

15.2.8 고의로 회사의 공문서, 게시물 등을 훼손,말소,변경 또는 파기한 자

15.2.9 경력의 사칭,위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된 자

15.2.10 회사의 허가없이 타직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15.2.11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사업상의 손해를 끼친자

15.2.12 회사의 재산에 대한 절도,횡령 또는 허가없이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자

15.2.13 고의로 태업한 자

15.2.14 수회에 걸쳐 징계 대상이 된 자

15.2.15 정당한 이유없이 교육훈련을 기피하거나 태만히 한 자

15.2.16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의 일원인 자

15.2.17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한 자로 인정된 자

15.2.18 전항 각호의 행위를 사주하거나 방조한 자

15.3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의 4종으로 구분한다.

15.3.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15.3.2 감봉 : 시말서를 받고 법이 정한 범위내의 급여액을 감한다.

15.3.3 정직 : 시말서를 받고 3개월 이내로 정직시킨다.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가지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정직기간중은 무급으로 한다.

15.3.4 해고

15.4 본 15 조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1.1 본 규정은 2007.1.2 일부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13.4.1 일부부터 개정, 시행한다.